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0. 17 선고 2021가합2005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1. A

2. B

3. C

4. D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지현, 안병준

피 고 E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변 론 종 결 2024. 7. 18.

판 결 선 고 2024. 10. 17.

주 문

1. 피고와 F 사이에 2017. 10. 30. 체결된 260,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93,600,000원, 원고 B에게 150,8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H은 슬하에 원고 A, 망 I, F을 두었다. 원고 B은 망 I의 처이고, 원고 C, D는 망 I의 자녀이며, 피고는 F의 처이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상속

1) 망인이 2014. 2. 15. 사망하여, 망인의 상속인인 H, 원고들1) 및 F은 망인의 소유였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4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F이 33.25/65 지분, 원고 A이 15.75/63 지분, 원고 B이 6/63 지분, 원고 C, D가 각 4/63 지분을 각 상속하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고, 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14. 8. 27.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들 및 F의 명의로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한편 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목록 기재 제 1, 4항 부동산(이하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라 한다)에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는 아래와 같이 순번 1 내지

4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망인의 사망 이후 순번 5, 6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

순번	설정일	채무자	채권최고액(원)
1	2008. 11. 4.	F	72,000,000
2	2009. 3. 31.	F	60,000,000
3	2009. 12. 9.	F	72,000,000
4	2013. 1. 24.	망인	960,000,000
5	2014. 9. 3.	F	360,000,000
6	2015. 6. 29.	F	192,000,000

다. K조합으로부터의 대출 등

원고들 및 F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상속세 등 상속 공통비용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고, F은 2016. 7. 29. K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1,6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J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 등기를 모두 말소하는 한편, K조합에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920,000,000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해주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의 공유자로서 원고들 소유 지분을 담보로 제공하였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수용 및 F의 피고에 대한 증여

1) 한편, 이 사건 각 부동산은 L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있었는데,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8. 25.경 수용개시일을 2017. 10. 20.로 정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사업구역에 대해 수용재결 결정을 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2017. 12. 1.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정비사업조합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정비사업조합은 2017. 10. 20.경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고, 원고들은 2017. 10. 23. 또는 10. 26. 원고들 몫의 각 수용보상금2) 을 수령하였다.

3) F은 2017. 10. 27. 자신의 몫인 수용보상금 1,775,054,030원3) 을 수령한 후, 2017. 10. 30.

위 수용보상금이 보관되어 있던 자신의 M은행 계좌에서 1,750,000,000원을 출금하여 그중 260,000,000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증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위 출금 후 계좌에는 10,036,663원이 남게 되었다.

마. K조합의 원고들 및 F에 대한 소 제기 및 원고들의 변제

- 1) K조합은 2017. 11. 17.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수령한 수용보상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하나 아직 상환이 되지 않았으니 기한이익 상실 예정일인 2017. 11. 30.까지 F의 대출에 대한 대출금 및 대출이자 합계 1,605,767,110원을 변제하거나, 추가 담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원고들은 위 담보채무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로 인한 연체이자(기한이익 상실일 이후 적용 지연배상금률 15.11%)까지 부담할 수 있으니 담보제공자간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 상환이 되길 바란다’는 취지로 통지하였다.
- 2) K조합은 위 대출금이 상환되지 않자 원고들과 F를 상대로 수용보상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K조합의 청구를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합102612)에 대하여 원고들만 항소하였고, 항소심(서울고등법원2019나2034921)은 2020. 6. 12. ‘K조합과 F, 원고들 사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에 의하면, F과 원고들은 근저당권 목적물이 수용되면 갖게 되는 수용보상금 채권을 K조합에 양도할 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수용되어 수용보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음에도 이를 K조합에 양도하지 않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수용보상금 채권을 소멸시켰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의 K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양도 의무는 이행불능에 빠졌으므로, 그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F의 잔존 대출금 중 각 원고들이 보유 중인 수용보상금 상당액(A 481,773,025원, B 107,770,394원, C 213,391,120원, D 213,391,170원)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을 K조합에 각 지급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K조합 소송’이라 한다).
- 3)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20. 7. 13.까지 원고 A은 391,825,555원, B은 282,730,658원, C는 33,628,701원, D는 33,626,556원을 K조합에 각 지급하였다.

바. 원고들의 F에 대한 소 제기 및 화해권고결정의 확정

1) 한편, 원고들은 K조합으로부터 채무 상환의 통보를 받은 후 2017. 12. 19.경 F을 상대로 'F이 원고들에게 K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상속세를 납부할 것이라고 기망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것인데, F은 K조합으로부터 상속세를 훨씬 초과하는 돈을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의 대부분을 자신의 기존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원고들은 K조합으로부터 대출금의 변제를 요구받는 상황이 되었는데, F의 기망으로 원고들은 K조합에 대한 채무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F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서울북부지방법원 2017가합28133)를 제기하였다가, 위 K조합 소송 결과에 따라 원고들이 K조합에 일부 채무를 변제한 후 원고들이 K조합에 변제한 돈에 대한 각 구상금 및 이 사건 건물의 임대수익에 대한 정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원인을 변경하였다.

2) 위 소송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구상금 및 정산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2021. 5. 26.자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으나, F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1. 피고4)는 2021. 8. 31.까지 원고 A에게 110,000,000원, 원고 B에게 180,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9,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약 피고가 위 각 금원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각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2021.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2. 원고들과 피고는 N조합에 대한 채무의 변제에 따른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 및 서울 성북구 O 지상 건물의 임대료 정산과 관련하여 위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서로 어떠한 채권채무관계도 없음을 확인한다.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F은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차임을 수령한 후 이를 공유자인 원고들에게 전혀 배분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F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차임에 관한 정산금 채권(이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이라 한다)을 갖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F의 기망으로 F의 K조합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이 사건 담보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F이 K조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결국 원고들이 그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으므로, 원고들은 F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그런데 F은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정산금 및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2017. 10. 30. 무자력 상태에서 자신의 처인 피고에게 260,000,000원을 증여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일반채권자인 원고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로 이 사건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발생한 것이어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은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으며, 이 사건 증여계약은 피고가 F의 부모를 부양한 대가로 받은 것일 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 여부 및 범위

1)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의 인정 여부

가)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4다53173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K조합 소송 결과에 따라 F의 K조합에 대한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F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최종적으로 성립한 시기는 2020. 7. 13.경으로, 이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었던 2017. 10. 30. 이후임이 명백하기는 하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 해당하여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1) F 및 원고들은 K조합과 사이에 2016. 7. 29.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제5조 제2항은 ‘설정자는 근저당물건의 멸실 · 훼손 · 공용징수 기타의 사고 또는 현저한 가격 하락이 있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곧 이를 채권자에게 통지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경우 설정자가 제3자로부터 수령할 배상금, 보상금 등의 채권이 발생한 때에는 설정자는 그 채권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이에 필요한 절차를 밟겠으며, 채권자는 그 수령금으로 다른 담보물의 제공 등 알맞은 사유가 없는 한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담보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F 및 원고들은 K조합에 그 수용보상금 채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었으나, F와 원고들은 2017. 10. 20.자 이 사건 담보부동산에 대한 수용재결에도 불구하고 각 수용보상금을 수령함으로써 F 및 원고들의 K조합에 대한 수용보상금 채권 양도 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K조합의 F 및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 이미 이 사건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

(2) 피고는 ‘F이 2017. 10. 30. K조합에 대한 채무를 원고들과의 상속지분에 따라 일부 변제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대출금의 변제를 거절함에 따라 일단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주장하는바,⁵⁾ 이에 의하더라도 F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미 자신의

상속비용을 넘는 K조합에 대한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로써 담보제공자인 원고들이 결국 이를 변제하여 F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도 존재하였다.

(3) K조합은 담보제공자인 원고들에게 2017. 11. 17.경 대출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2017. 11. 30.까지 이를 상환하지 않으면 15.11%의 고율의 연체이자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통보하였다. 이후 K조합은 원고들과 F에 대하여 위 1.의 마.항에서 본 바와 같이 수용보상금의 상환 등을 구하는 소(K조합 소송)를 제기하였고, 원고들은 2017. 12. 19.경 F에 대하여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F의 대출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5) F은 K조합 소송 제1심 결과에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제1심에서 지급을 명한 K조합에 대한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고, 원고들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변제 의무 및 범위 등을 다투었다. 원고들은 물상보증인인 원고들은 수용보상금 채권 양도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거나, K조합의 고의 또는 과실로 F의 수용보상금 채권에 대한 압류 등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들의 책임이 면책되어야 한다거나, 원고들의 수용보상금 채권 양도 의무 위반과 K조합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으나, 위 항소심은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이 보유 중인 수용보상금 내에서 F의 K조합에 대한 잔존 채무의 변제 의무를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결국 위 판결이 확정되어 원고들은 위 판결의 취지에 따라 K조합에 채무 일부를 각 변제함으로써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성립되었다. 원고들이 K조합에 최종적으로6) 위 채무를 변제한 것은 2020. 7. 13.으로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는 후 2년 이상이 지난 시점이기는 하나, 이는 원고들과 K조합 사이에 위와 같은 변제 의무 및 범위 등에 관한 소송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이는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

나)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의 인정 여부

피고는 원고들 주장과 같이 F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수용될 때까지 424,184,279원의 차임을 수령하였음은 부인하지 않으면서, F과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차임을 대출금의 이자와 임대보증금의 반환 등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F은 정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F에 대하여 F이 수령한 이 사건 건물의 차임과 관련하여 공유지분에 따른 정산금 채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다) 피보전채권의 범위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들의 F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 채권 및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인데(이하 이 사건 구상금 채권과 이 사건 정산금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피보전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피보전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위 1.의 바.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과 F 사이에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으므로, 결국 각 원고들의 F에 대한 이 사건 피보전채권은 원고 A 110,000,000원, 원고 B 180,000,000원, 원고 C, D 각 9,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된다.

나. 채무자의 무자력

1) 앞서 든 증거, 갑 제8호증의 기재, 성북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P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F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으로 M은행 계좌에 남아있는 예금 잔고 10,036,663원 및 남양주시 Q 임야 1/8 지분과 안양시 동안구 R 아파트 S호(전유부분 11.55㎡)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위 임야에 대한 지분의 가액은 15,000,000원 상당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7) 위 아파트도 그 면적이나 과세내역에 비추어 별다른 재산적 가치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소극재산으로 K조합에 대하여 원금 1,600,000,000원의 채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정산금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으므로, F은 채무 초과 상태로서 무자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F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수령한 수용보상금

1,775,054,030원과 K조합이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추심을 한 수용보상금 221,828,503원 합계 1,966,882,533원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으로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으로서의 무자력이란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없음을 뜻하는 것이고, 특히 임의 변제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한 변제가 고려되어야 하므로, 소극재산이든 적극재산이든 위와 같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재산인지 여부가 변제자력 유무 판단의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적극재산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재산가치가 없어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참조), F 몫의 수용보상금 중 K조합이 압류추심을 한 221,828,503원은 원고들의 이 사건 피보전채권에 대한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어 F의 적극재산이 될 수 없음은 명백하다. 한편,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F은 위 수용보상금 중 1,750,0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중 26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관하고 있었다는 것인데, F이 자신의 M은행 계좌에 있던 수용보상금을 현금으로 인출함으로써 원고들과 K조합 등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8) 실제로 원고들과 K조합은 F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음에도 위 현금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어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는바, 위 현금으로 인출한 금원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더 이상 채권의 공동담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재산으로서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K조합에 대한 대출금이 상속 공통비용으로 사용되었음을 전제로 F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들에 대하여 456,555,560원의 구상금 채권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K조합에 대한 대출금 1,600,000,000원이 상속 공통비용으로 사용되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이 원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은 구상금 채권을 갖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수익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2)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F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F의 모친이 피고가 F의 부모를 부양해온 데 대한 대가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주고자 하였고, 그 방식으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F에게 그 몫을 줌으로써 F이 모친의 몫까지 수용보상금을 받게 된 것이며, 이에 따라 F은 수용보상금 중 F 모친의 몫 일부를 피고에게 증여한 것일 뿐이고,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F의 배우자로서 F이 당시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계약을 하였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피고가 위 증여받은 금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F의 모친을 부양하면서 살고 있다거나 F이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K조합에 대한 채무를 일부 변제하였다는 사정만으로 F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F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사해행위가 금전 증여인 경우 그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9) 원고 A에게 93,600,000원, 원고 B에게 150,8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7,8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

별지

1) 원고 B, C, D는 망 I을 대습상속하였다.

2) 원고 A은 840,283,130원, 원고 B은 320,087,100원, 원고 C, D는 각 213,391,120원을 수령하였다.

3) F 지분에 해당하는 수용보상금은 총 1,929,014,010원이었으나, K조합이 위 수용보상금 일부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결과 F은 위 1,775,054,053원만을 실제로 수령하였다.

4) F을 가리킨다.

5) 피고 2022. 1. 14.자 준비서면 2쪽 등

6)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위 2020. 7. 10. 이전에도 K조합에 채무 일부를 변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7) F은 이 사건 증여계약이 있기 1년여 전인 2016. 10. 25. 위 부동산의 1/4지분을 소유한 T으로부터 U과 함께 각 1/8 지분을거래가액 30,000,000원에 매수하였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F이 소유한 1/8 지분의 가액은 15,000,000원 상당일 것으로추인된다. 피고도 위 부동산의 가액이 위 15,000,000원과 근사한 15,963,750원 상당[= 공시지가(15,000원)× 8,514㎡× 1/8]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 이러한 이유로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더라도, F이 인출한 현금을 F의 적극재산으로 산입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9)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260,000,000원을 원고들의 각 피보전채권 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이다.